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359호

##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기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기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주의 사항 -

1.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품목과 건설특화 품목의 컨소시엄 구성 형태가 다르니 세부 지원 내용에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 일반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 연구기관 등(선택)
- \*\* 건설 특화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 연구기관 등(선택)

2. 세부 품목 구분

- 일반 품목 : 전체 51개 품목 중 건설특화 품목을 제외한 44개 품목
- 건설특화 품목 : 13, 14, 26, 27, 28, 39, 51 총 7개 품목
- \* 상세내용 [별첨1] 세부 품목 개요서 참조

3.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디지털기반중소사업장 산재예방R&D	5월 28일	6월 15일 ~ 7월 2일	7~8월	9월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 소규모 중소기업 또는 건설 현장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도	'26년도
사업지원 범위확대	제조업 한정	건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가점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신 설>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기타사항	<신 설>	(자격 신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 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신 설>	(서류 간소화)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차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50인 미만 등 소규모 중소기업 또는 건설 현장에 대한 디지털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 체계 확립

□ (지원규모) '26년 22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형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컨소시엄형	최대 2년, 6.6억원 이내	75% 이내	품목 內 자유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필수적 성과목표) 2개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필수 반영 필요

구 분	성과 목표명	전체 성능지표 대비 비중
산재예방 효과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수준향상을 측정하는 지표 (예시)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감소율	10%
실증확산	(선택) ① 또는 ② 항목 중 선택 ① 스마트안전보건장비 지원사업(노동부) 품목 또는 제품등록 ② 도입기업 외 1개 기업(또는 공사현장) 이상 결과물 보급	10%

## 4. 신청자격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의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 \* 공사 현장의 증빙 기준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50억 미만 공사 현장을 실증 대상으로 신청 할 경우 우대\*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지표 점수 최고점 부여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 ① 일반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구 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급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b>중소기업</b>	컨소 시엄 <필수>
공동연구 개발기관	①도입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b>50인 미만 중소기업</b>	
	②도입기업(필수)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산업 현장 안전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b>대학, 연구소 등</b>	

② 건설 특화 품목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1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구 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급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b>중소기업</b>	컨소 시엄 <필수>
공동연구 개발기관	①도입기업(필수)	산업 현장 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건설 현장을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b>중소기업 건설사업자</b> ※ 실증 현장은 300억 미만 공사 현장 2곳 이상	
	②도입기업(선택)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산업 현장 안전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b>대학, 연구소 등</b>	

- 컨소시엄 구성시 공급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 현장 2개 이상 필수
- 공동 연구개발기관 1개 기업이 적용 현장 2개를 보유 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가능 (단, 2개 현장은 계약 내용의 발주처가 다르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협약서 필수 제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일반품목) 신청 가능(O)				(일반품목) 신청 가능(O)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기업 [도입기업]	D기업 [도입기업]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기업 [도입기업]	D대학 [비영리]
(일반품목) 신청 불가(X)				(일반품목) 신청 불가(X)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대학 [비영리]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1개로 신청 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 1개로 신청 불가			

(건설특화) 신청 가능(O)		(건설특화) 신청 가능(O)														
<table border="1"> <tr> <td>주관연구 개발기관</td> <td>공동연구 개발기관</td> </tr> <tr> <td>A기업 [공급기업]</td> <td>B기업 A현장, B현장 [도입기업]</td> </tr> </table>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B현장 [도입기업]		<table border="1"> <tr> <td>주관연구 개발기관</td> <td>공동연구 개발기관</td> <td>공동연구 개발기관</td> </tr> <tr> <td>A기업 [공급기업]</td> <td>B기업 A현장 [도입기업]</td> <td>C기업 B현장 [도입기업]</td> </tr> </table>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도입기업]	C기업 B현장 [도입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B현장 [도입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도입기업]	C기업 B현장 [도입기업]														
(건설특화) 신청 불가(X)		(건설특화) 신청 불가(X)														
<table border="1"> <tr> <td>주관연구 개발기관</td> <td>공동연구 개발기관</td> <td>위탁연구 개발기관</td> </tr> <tr> <td>A기업 [공급기업]</td> <td>B기업 A현장 [도입기업]</td> <td>C대학 [비영리]</td> </tr> </table>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도입기업]	C대학 [비영리]		<table border="1"> <tr> <td>주관연구 개발기관</td> <td>공동연구 개발기관</td> <td>공동연구 개발기관</td> </tr> <tr> <td>A기업 [공급기업]</td> <td>B기업 A현장 [도입기업]</td> <td>C기업 A현장 [도입기업]</td> </tr> </table>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도입기업]	C기업 A현장 [도입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도입기업]	C대학 [비영리]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A현장 [도입기업]	C기업 A현장 [도입기업]														
건설 현장 1개로 신청 불가		건설 현장 동일 주소로 신청 불가														

- (지원 분야) 4대 분야(세부 품목 개요서 [별첨 1] 참조)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졸업제 제도 미적용)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임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 · 접수기간 : '26. 6. 15.(월) ~ 7. 2.(목),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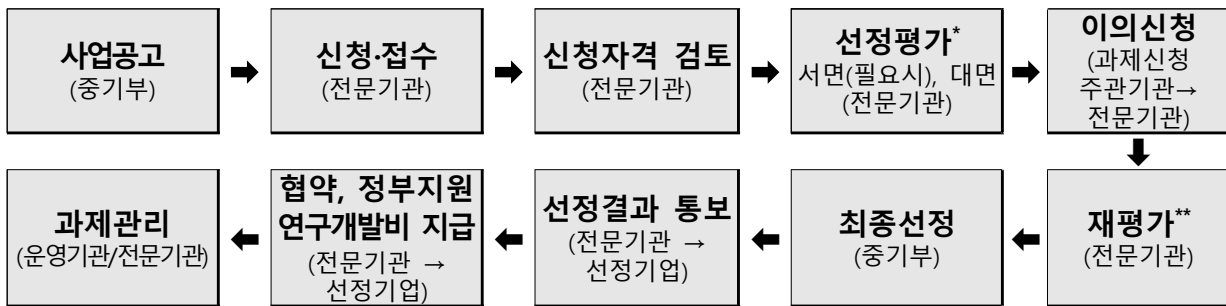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필수 확인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7. 기술료 징수관리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은 기술료 면제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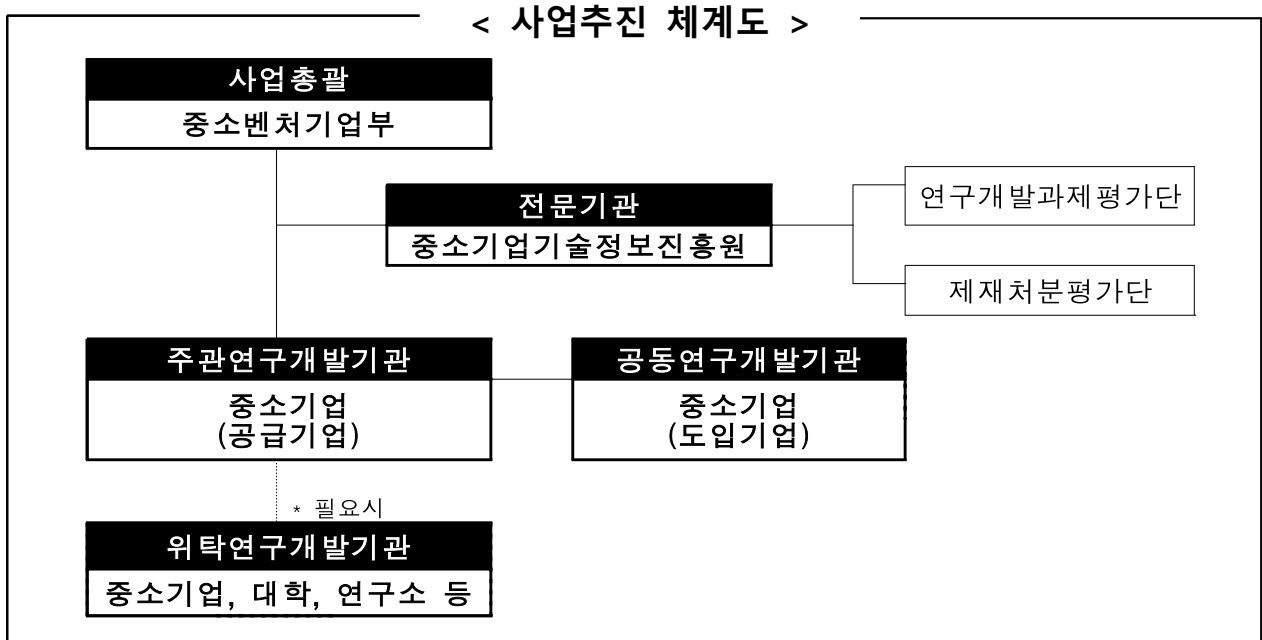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 추진체계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참여 권장)

##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1fqd](http://pf.kakao.com/_l1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제출 서식

[붙임3] 디지털기반 중소기업장 산재예방기술개발사업 세부지원내용

[붙임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별첨] 2026년 세부 품목 개요서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